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공고 제2026-14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2026년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회장

2026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대상자 모집 공고(2차)

1. 사업목적

- 해외농업자원개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의 맞춤형 조언과 전문기관 자문 지원
-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전문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현지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 및 성공적 정착 지원

2. 지원자격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기업
-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사업신청서의 검토)에서 규정한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선정 제외

3. 지원기업 선정 방법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를 갖춘 대상자에 한해 평가위원의 서류심사 평가결과 70점 이상 시 적격으로 선정 * 필요시 면접평가 진행
 - 지원기업은 당해 연도 예산을 감안하여 종합평점 고득점순으로 결정
- 평가기준 : “컨설팅사업 시행기준”(이하 ‘시행기준’) 참조
- 지원기업 선정 결과발표 : 서면 통보
- 심사 가점 대상
 - 정책 전략 품목(밀·콩·옥수수·카사바·오일팜·배추)을 대상으로 해외농업 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자
 - 다변화 대상지역(미주, CIS, 오세아니아) 진출한 신고기업(러시아는 제외)
- 선정 제한 사유

<선정 제외 대상>

- 응모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공고내용의 사업목적, 사업 대상범위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사업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본 지원사업과 동일한 건으로 해외 사업목적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부도, 휴·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사업체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4. 보조금 지원

가. 지원기준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시행기준」에 따라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국내컨설팅 : 국내 전문가 또는 컨설팅 업체 활용을 통한 국내 자문
 - 해외컨설팅 : 국내 전문가 파견 및 현지전문가 활용 또는 국내·해외 컨설팅 업체 활용을 통한 해외 현지 자문
- * 기자재 구입 및 운영자금 등 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 불가

나. 보조비율 및 지원 한도

○ 컨설팅사업 총 예산 중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지원기준	보조비율(%)	지원 한도
대기업	50	총사업비 200백만원(국고 보조 한도 100백만원) 이내
중견·중소기업	70	총사업비 143백만원(국고 보조 한도 100백만원) 이내

* 보조금 지원 금액은 협약 체결 시 협회-기업 간 협의 후 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

다. 지원항목

○ 직접인건비(국내, 해외), 직접경비(항공료, 체재비, 현지활동지원비, 기타 경비) 등을 규정 한도* 내 지원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사업 시행기준」참고

라. 보조금 지급 방법

○ 보조금 지급

- 컨설팅 사업 전 : 보조금 지원 결정액의 50% 범위 내 선금 지급

* 선금금 지급보증보험(이행지급보증보험 포함) 접수 必

- 컨설팅 사업 후 : 사업비 정산 후 잔금 지급

* 별표5 제재 등급표에 근거하여 사전보고 및 승인 없이 집행을 80% 미만일 경우, 향후 참여제한 1년

마. 결과보고서 작성 안내

○ 컨설팅 전문가는 컨설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상 기업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컨설팅 결과보고서 1부(사진 등 현지 컨설팅 증빙서류 포함) 및 전문가 보고서 각 1부

바. 결과 확정 및 활용

○ 확정된 조사결과보고서는 조사 완료 1년 후 해외농업개발서비스(www.oads.or.kr)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기업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 기간·범위 조정 가능*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사업 시행기준」 제19조 참고

사. 사후 관리

- 지원대상자가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등), 제82조(대여금 등의 반납)에 따라 처리
- 지원기업은 사업 추진 현황을 컨설팅 완료 후 3년간 전담기관(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게 보고

5. 컨설팅 시행

- 시행기한 : 지원기업과 협약이 체결된 후 2개월 이내 사업 착수
- 지원기간 : 신청자의 조사계획서 심사 후 결정(최대 6개월 이내)
- 보고서 작성 및 정산기한 : 기간 내 컨설팅 완료 후 정산보고서·결과보고서 1개월 이내 제출
- 사업완료기한 : ~ 11월 30일 까지(결과보고 및 정산 보고 완료)
 - * 컨설팅 완료 후 정산보고서·결과보고서 1개월(30일) 이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10%를 감액하여 지원, 단 결과보고서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인을 받아 제출기한을 1개월 연장 가능

6. 사업 신청 및 접수 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6. 09. 4.(금), 18:00 한
 - * 예산 조기 소진 시 컨설팅사업 접수기간 이전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음
- 신청서류 : 컨설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
 - * 신청서 양식 및 작성 요령 등은 아래 첨부파일 [컨설팅사업 시행기준] 및 해외농업개발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oads.or.kr>) 참조
- 접 수 처 : 해외농업개발서비스(www.oads.or.kr) 홈페이지 접수
 - * 문의처 :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조사·컨설팅 담당자
(전화 : 02-6257-6571, e-mail : koaa.office@gmail.com)
 - * 서류 접수는 홈페이지 통해서만 진행, 우편 및 메일·방문 접수 불가, 추후 합격 기업에 한해 원본 제출 (온라인 제출본과 원본이 다를 경우 취소 처리)

* 홈페이지(www.oads.or.kr) 사업 신청 '26. 9. 4. 18:00(한국시간)까지 접수분에 한함

※ 제출서류

1. 컨설팅 신청 공문 1부
2. 컨설팅 신청서 1부
3. 컨설팅 사업계획서 1부
4.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 증빙서류(신고 수리 공문) 1부
5.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최근 3년) 1부
6. 납세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미제출시 대기업으로 분류)
8. 전문가 이력서 등 경력증빙서류 각각 1부(미제출시 5등급으로 분류)
9. 개인·법인 정보 제3자 제공 및 컨설팅 보고서 공개 동의서(시행기준 별지 8호 서식) 1부
10.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시행기준 별지 9호 서식) 1부
11.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자금 지원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첨부서류는 유효기간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첨부서류 중 전문가 이력서 등 경력증빙서류 내에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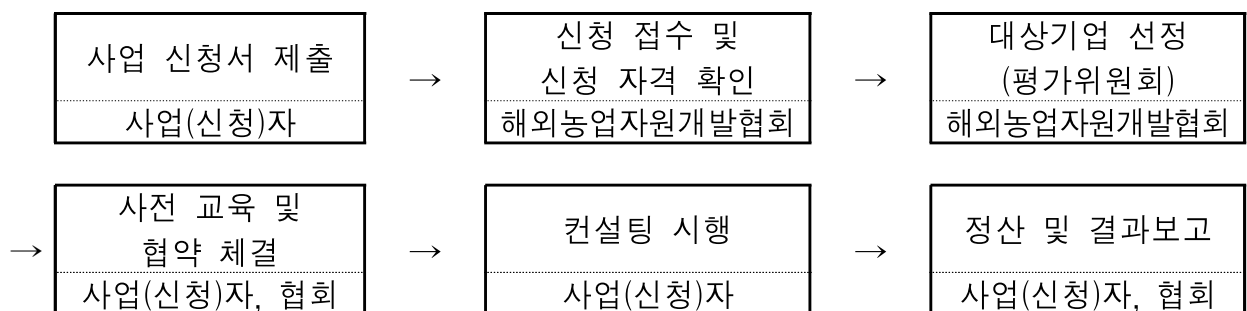
* 최근 3년간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단, 3년 미만 법인은 해당 연수에 맞는 재무제표 제출, 3년 이상 법인이 3년 미만의 자료 제출 시 평가에 감점 있음)

7. 지원기업 선정 및 통보

○ 컨설팅 지원기업은 서류 평가를 통해 선정

* 필요시 면접평가 진행하며 면접평가 대상기업 별도 알림

○ 선정절차



- 자세한 평가 절차 및 방법은 사업 시행기준 참조

○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시행기준」에 따름

<첨부>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사업 시행기준」 1부.